

전산기기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기업자금관리서비스(Hana 1Q bank CMS, Hana 1Q bank CMS PLUS) 이용과 관련한 아래 표시된 계약의 목적물인 “은행” 소유의 컴퓨터 시스템(이하 “장치”라 한다)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은행”은 “고객”에게 “장치”를 임대하고 “고객”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물】

① 제품의 명세 및 수량

구분	부품명	명세	수량	비고
H/W	Server			랙형, 타워형
	PC			키보드,마우스포함
	모니터			
기타				
설치장소				

② “이 계약”에서 특히 “장치”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기”라고 한다.

제3조【납품, 설치 및 조정】

- ① “은행”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기와 장소에 맞추어 “장치”를 납품하기로 하고, 신속히 사용 가능한 상태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한다.
- ② “고객”은 “은행”이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속하게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확보하고 수납 준비를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은행”은 “장치”가 “은행”의 소유에 속한다는 취지의 표시를 “장치”에 부착할 수 있다.

제4조【임대료, 설치비용 등】

- ①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 ② “장치”의 납품, 설치, 회수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은행”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고객”과 “은행”간에 체결된 “Hana 1Q bank CMS 이용계약” 또는 Hana 1Q bank CMS PLUS 이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장치의 유지 보수】

- ① “은행”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은행”의 부담 하에 보수한다. 단,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장치”를 수리 또는 조정할 필요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장치”의 정기보수는 원칙적으로 “은행”의 통상의 근무시간 이내에 한다.

제7조【다른 기구의 설치, 장치의 개조 또는 이전】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1. “장치”에 다른 기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장치”를 개조할 경우
2. “장치”를 최초 설치장소에서 이전할 경우

제8조【기기의 추가 또는 교체, 계약의 일부 해지】

기기의 추가 또는 교체, 계약의 일부 해지의 경우에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9조[장치의 반환]

- ① “고객”과 “은행”간에 체결된 “Hana 1Q bank CMS 이용계약” 또는 “Hana 1Q bank CMS ^{PLUS} 이용계약”의 계약 기간 만료시 “고객”은 “은행”에게 “장치”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장치”의 반환을 유예할 합리적인 사유 발생시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교체되거나 계약만료로 인하여 “고객”이 “은행”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장치를 신속히 회수하도록 한다.
- ③ 제2항의 회수 이전에 “고객”은 “은행”에 반환 통보를 해야 하며 설치된 다른 기계기구를 분리하여 내는 등, “장치”를 인도 당시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제10조[선관의무]

- ① “고객”은 “장치”의 설치장소를 미리 “은행”이 정한 기준에 의거 “장치”를 위해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고, 또 제9조에서 정한 장치의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장치를 관리하도록 한다.
- ② “고객”은 제3자에 대해 “이 계약”에 기초한 임차권 또는 “장치”를 양도하거나, 혹은 “장치”를 대여 또는 이에 권리를 설정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치”의 분실, 망실, 결함, 정보유출,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일체의 처분행위 등으로 인해 “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고객”은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권 및 비밀존수]

- ① “은행”은 그 종업원(외주 직원 포함)을 “장치”의 납품, 보수, 관리 및 회수 등을 위해 “장치”의 설치장소에 출입시킬 수 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출입으로 얻은 “고객”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계약해지]

- ① “이 계약”의 해지 통지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도록 한다.
- ②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행한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통지하고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치”의 보전 등에 소요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 1. “고객”에게 파산신청, 회생(고객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 등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처분, 거래정지처분 등을 받는 경우
 - 3. “고객”이 제세공과금을 체납하여 압류를 당하거나, 기타 “고객”의 중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위험이 있는 경우
- ③ “이 계약”이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될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특약사항]

“이 계약”의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고객”과 “은행”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고객)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인)

(은행) 주 소 :
은 행 명 : (주)하나은행 지점장 (인)

